

신청인 첨부서류	1.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3.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,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신청인이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(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) 6. 다음 각 목의 서류(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가.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)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나. 해당 외국인이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7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(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8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(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※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,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※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.	수수료 없음
참고사항	법무부·공소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·심리적·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

금융정보(입금계좌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

본인은 금융기관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 또는 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※ 해당란에 √ 표시합니다.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아래 √ 표시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대상 서류	☐ 1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☐ 2.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☐ 3.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☐ 4. 국세 납세증명서 ☐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☐ 6. 소득금액증명 ☐ 7. 사업자등록증명	
	신청인(대리인 또는 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
본인정보 제공 요구서

※ 해당란에 √ 표시합니다.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 √ 표시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 범죄피해구조금의 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.

대상 서류	☐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☐ 2. 기본증명서(상세) ☐ 3.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	
	신청인(대리인 또는 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
법원행정처장 귀하